

전후 호헌적 평화운동에 나타난 탈근대적 평화담론

康慶子*

(e-mail: keiko84@hanmail.net)

目次

1. 서론
 2. 일본의 50년대 호헌적 평화 운동의 전개 양상
 - 1) 50년대 군사화와 개헌논의 대두의 정치적 배경
 - 2) 호헌적 평화운동의 전개 양상
 3. 호헌적 평화운동에 나타나는 탈근대적 평화담론
 4. 결론
-

1. 서론

오늘날 동북아 지역은 심화된 패권경쟁으로 과열화된 군사화와 안보딜레마 속에 세계에서 가장 전쟁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의 하나가 되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2013년 연감에 의하면 동북아 지역의 평화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평화(fragile peace)’로서 2008년 이후 현저하게 나타나는 급속한 군사력 증강은 이 지역의 안보상의 긴장을 높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¹⁾ 일찍이 애런 프리드버그(Aron Friedberg)는 그의 논문 「아시아에서 경쟁

*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박사수료

1) <http://www.sipri.org/yearbook/2013/files/SIPRIYB13Summary.pdf>. 스웨덴 스톡홀름의 국제 평화연구소(SIPRI)의 2013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냉전의 절정이었던 1985년과 탈냉전기인 1995년과 비교할 때 세계의 군사비는 1조 1700억 달러에서 8140억 달러로 31% 감소하였으나, 동북아 지역만은 1020억 달러에서 1400억 달러로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2003~2007년에 비해 2008~2012년에 아시아로의 무기 유입은 41%에서 47%로 급증하

의 전조(Ripe for Rivalry in Asia)」에서 냉전 해체가 아시아에 있어서는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예견²⁾하였는데 그의 예상대로 동북아는 아시아 패러독스(Asia's paradox)³⁾ 속에 심화되는 군사화 속에서 안보딜레마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 역내 갈등과 군사적 긴장관계를 심화시키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최근 동북아 역내 안보딜레마와 불안정성의 가장 큰 핵심적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표적 논의는 중국의 부상(China's rise)에 따른 역내 새로운 질서(new order)와 미중간의 패권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과 중국의 부상에 따른 역내 패권의 충돌에 대해 대부분의 연구자는 미중의 '피할 수 없는 충돌(inevitable conflict)'를 지적하면서 더 나아가 머지않은 장래의 전쟁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다.⁴⁾ 특히 『강대국 정치의 비극(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2001)』⁵⁾에서 동북아 역내 핵전쟁의 위협까지 예견했던 미어셰이머(Mearsheimer John)는 「중국의 평화롭지 않은 부상(China's unpeaceful rise)(2006)」에서 중국의 평화로

였음을 알 수 있다.

- 2) Friedberg, Aaron(1993), "Ripe for Rivalry: Prospect for Peace in a Multipolar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3(Winter), p.7. 프리드버그는 1993년에 발표한 글에서 아시아에는 민주주의, 경제사회적 평등, 탈민족주의적 정치문화, 활력 있는 지역기구 등 유럽이 냉전해체 이후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던 요인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아가 대국들이 충돌하는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다.
- 3) 아시아패러독스(Asia's paradox)란 경제적으로는 밀접하지만 정치·안보 관계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동북아시아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경제적 상호의존도는 매우 높지만 역사와 안보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신뢰 부족으로 정치·안보 협력은 어려운 상황을 뜻하는 말이다.
- 4) 예를 들어 로버트 슈터(Robert G. Sutter)는 미중 관계를 '이중적 패턴(a pattern of dualism)'이란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미중은 구성적이고 협조적인 개입을 하면서 최대의 균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 의심과 견제 속에 장래에 있어서 우발적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계획이나 헤징(hedging)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서 21세기 초 긍정적인 균형세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미중관계는 국제적 평화와 개발, 협조적인 관계로 지지되고 있으나 결국은 적대적인 관계로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Robert G. Sutter (2010) *U.S.-Chinese relations : perilous past, pragmatic present*, Lanham, Md. :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p.147. 또한 프리드버그는 「미중관계의 미래『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Is Conflict Inevitable?』에서 미중관계를 자유주의 현실주의 구성주의의 3가지 이론에 기초하여 분석하되 이를 각각 낙관적인관점과 회의적관점(Liberal Optimists, Liberal Pessimists, RealistPessimists, Realist Optimists, Constructivist Optimists, Constructivist Pessimists)의 6가지 관점으로 세분하여 분석하면서 결론적으로 당분간의 미중관계는 분명한 방향없이 협력과 경쟁의 '혼합적 성격(mixed character)'을 유지한 채 아주 좁은 범위 내에서 진동할 것이라고 예견하되 미중의 관계가 보다 더 안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음을 전망하였다. Aaron L. Friedberg(2005)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Is Conflict Inevitable?*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2, pp. 7-45.
- 5) Mearsheimer, J.J(2001)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 Norton.

운 부상이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미중은 치열한 안보 경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음을 단언하고 있다.⁶⁾ 또한 「폭풍전야(The Gathering Storm: China's Challenge to US Power in Asia)(2010)」에서는 강력한 중국에 의해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의 전망하면서 동북아 역내 피할 수 없는 격돌(inevitable clash)을 예견하고 있다.⁷⁾

이러한 미중간의 충돌을 예견하는 것은 학자들의 의견만이 아니다. 2014년 3월 미국방부에서 발표된 2014년판 QDR(Quadrennial Defense Review) 보고서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여러 파괴적인 경쟁과 분쟁의 촉진요인을 언급함에 있어 중국을 지목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급속도로 진행되는 중국의 포괄적인 군사력 증강이 투명성과 개방성이 결여된 채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중국과 같은 나라들은 미국의 군사력에의 대항을 추구하고 있다고 명시하고⁸⁾ 이를 견제하기 위해 아태 지역에 있어서의 동맹을 강화하고 2020년까지 해군의 60%를 중요한 해군이 있는 일본 해군을 포함하여 주둔시킬 것을 밝히고 있다.⁹⁾ 또한 미국은 한층 더 강화된 미일동맹관계의 구축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적극 지지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견제를 분명히 하면서 머지않은 장래에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충돌을 암시하며 보고서를 맺고 있다. 중국은 이와 같은 미국의 견제와 봉쇄 정책에 기초한 미일동맹의 강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중러 관계를 강화시켜나갈 뿐만 아니라 균형 대화와 군사력 증강에 힘쓰고 있다.¹⁰⁾

이러한 미중관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문제¹¹⁾ 역시 동북아 역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의 위험성을 촉발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김정은 체제하 최대의 전략 카드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유훈 차원에서조차 핵·미사일 개발은 지속될 것이며¹²⁾ 북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은 2009년 이후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북한의 핵능력만 강화되어

6) Mearsheimer, J.J. (2006). China's unpeaceful rise. *Current History*, 105(690), pp.160-162..
 7) Mearsheimer, J.J. (2010). *The Gathering Storm: China's Challenge to US Power in Asia*.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3(4), p.381. 이러한 논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을 주장하는 중국 측의 논의 Yang, S. (2013). *Power Transition, Balance of Power, and the Rise of China: A Theoretical Reflection about Rising Great Powers*. *China Review*, (2). 35. 대부분의 연구가들의 논의는 미중간의 충돌이 동북아역내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8) http://www.defense.gov/pubs/2014_Quadrennial_Defense_Review.pdf p.6.
 9) *ibid.* p.34.
 10) 중국은 매년 국방예산을 10% 이상 증액해 왔으며 최근 10년(2004~2013년) 동안의 국방비 증가율은 240.18%에 이른다.
 11) 문정인·서승원(2013) 『일본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 일본 최고 전략가들이 말하는 일본의 本心』 삼성경제연구소, p.154.
 12) 조민(2012) 「김정은 체제의 대내외 전략과 통일정책」 통일정책연구 제21권 제2호 p.3.

한반도는 잠재적인 화약고가 되었다.¹³⁾ 또한 한일 중일간의 영토문제와 역사 문제 역시 동북아 역내 갈등과 대립 군사화를 촉진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동북아 지역은 군사화가 심화되는 안보딜레마현상 속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불안정적인 지역이 되었다는 것이며 이는 동북아 역내 비군사적 방법에 의한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구축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반증해주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정인은 동북아 역내 억지 파워와 동맹정치를 통하여 전쟁을 방지할 수는 있었으나 안전보장과 안정된 평화를 공유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역내 평화구축에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는데¹⁴⁾ 동북아 역내의 불안정성은 군사력이라는 억지력에 의한 평화구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¹⁵⁾ 역내 불안정 요인을 제거하고 새 평화질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평화 담론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본의 호헌적 평화운동의 발아기인 50년대에 주목하여 호헌운동의 전개 양상과 호헌운동의 논의에 흐르고 있는 탈근대적 평화담론을 고찰하여 현 동북아 역내 평화 구축을 위한 함의를 찾는 것이 그 목적이다. 탈근대적 평화담론이란 위험한 군비경쟁을 야기하는 국가 중심적 시각과 군사 문제에 대한 주된 관심을 비판하고 비국가행위자와 비군사적 방법에 의한 평화구축을 중시하는 평화담론이다.¹⁶⁾ 전후 국제정치체제가 미소대립의 냉전의 시대를 맞아 국가 이데올로기가 정점에 있던 50년대에 탈근대적 평화담론의 특성이 나타난 일본의 전후 50년대 호헌적 평화운동과 논의를 살펴보고 이를 통한 오늘날 동북아 역내 평화구축에 대한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2. 일본의 50년대 호헌적 평화 운동의 전개 양상

1) 50년대 군사화와 개헌논의 대두의 정치적 배경

1945년 종전 이후 점령군 사령부의 대일 정책은 탈군사화를 통한 군국주의의 배제와 민주주의의 확립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다. 즉 점령 정책의 우선적 목표는 일본의 탈군사화로서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반에 뿌리내려져

13) 한후아(2011) 「동아시아에서 미중관계 : 경쟁의 전조?」 『동북아 신냉전과 평화운동』 참여연대 p.34.

14) 文正仁(2009) 「移行期の東北アジア -北の核問題と将来の地域秩序-」 孝忠延夫 [外]編著 『グローバル市民社会における平和, 安全, そして安心』 関西大学出版部, pp. 71-91.

15) Hayden, P.(2004). Constraining War: Human Security and the Human Right to Peace. *Human Rights Review*, 6(1), p.35.

16) 구갑우 (2008) 『국제관계학 비판 : 국제관계의 민주화와 평화』 후마니타스. p.200.

있던 군국주의를 뿌리 뽑기 위하여 민주주의를 확립시켜 나갔다.¹⁷⁾ 그러나 1947년 트루만 독트린으로 시작되는 냉전체제의 성립과 1950년 한국전쟁은 미국의 대일 정책 궤도를 수정하게 만들었다. 미국은 일본을 강력한 반공의 보루로 삼기 위해 ‘점령정책의 재고·민주화의 시정’이라는 명목 하에 이른바 ‘역코스(reverse course)’ 정책을 강행하게 된 것이다.¹⁸⁾

미국은 한국전쟁에 전면 무력 개입하면서 일본 열도를 출격 보급기지로 사용하고 초헌법적 맥아더 지령에 의해 경찰예비대를 창설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함께 안보 조약을 체결하여 일본 열도의 군사기지화를 합법화 하게 된다. 미일안보조약에 의한 안보체제는 군사동맹 조약의 성격을 갖는 군사적 정치적 지배체제로서 안보체제와 평화헌법은 근본적으로 모순되고 대립되는 것이었으나 역코스 정책의 흐름 속에 재군비의 길이 시작된 것이었다.¹⁹⁾

무엇보다 일본은 54년에 체결한 미일상호방위원조협정(MSA협정)으로 인해 군사력 강화를 위한 의무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MSA협정 8조는 ‘자국의 정치 및 경제 안정에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력, 자원, 시설 및 일반적 경제 조건이 허락하는 한 자국의 방위력과 자유세계의 방위력 발전 및 유지에 기여하기위해 자국의 방위력 증강에 필요한 합리적 조치를 취한다’ 라고 명기함으로써 일본이 자국 및 냉전 시대 자유진영의 방위력을 위해서 방위력 증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²⁰⁾ 이러한 MSA협정으로 일본의 재군비는 가속화되었으며 50년에 7만 5천명의 경찰예비대로 발족하였던 일본의 군사력은 MSA협정 후에는 자위대로 명칭을 바꾸어 직간접의 침략에 대비하여 본국을 방위하는 명백한 군대로 발전하게 된다.²¹⁾

평화헌법에 저촉되는 이러한 전후 일본의 재군비 상황은 헌법 개정 문제를 현실의 정치과제로 부상하게 만든다. 당시 수상 요시다는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우려와 국민 정서, 재군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개헌에 나서기 꺼려하였다. 그는 9조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미국의 재군비 요구를 거절하면서 미일동맹을 축으로 경군비로 경제 발전에 치중하는 노선을 견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자유당 내 반주류파인 하토야마(鳩山)파에서 요시다 정권 비판과 함께 재군비를 합법화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주장하게 된다.

당시 자유당 내 친미 현실주의적 주류파(요시다파)와 민족주의적 반주류파(하

17) 패전 직후 대일정책의 핵심은 일본의 군국주의를 일소하여 비무장평화주의를 정착시킨다는 3D정책으로 비군사화(De-militarization)민주화(Democratization)지방분권화(De-centralization)이었다.

18) 존 다우어(2009), 최은석 역 『패배를 껴안고』,민음사, p.712.

19) 末川博(1965) 『憲法問題の焦点:国民一人びとの運動にするために』 京都平和委員会. p.53.

20) 歴史学研究会 編(1990) 『日本同時代史(第3卷) 五五年体制と安保闘争』 青木書店.p.137.

21)末川博(1965) 『憲法問題の焦点: 国民一人びとの運動にするために』 京都平和委員会. p.67-68.

토야마파) 두 파는 재군비와 외교정책 그리고 점령정책에 대한 평가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두 파간의 갈등이 헌법 개정 문제로 인해 심해지면서 요시다는 결국 53년 11월 당내에 헌법 조사회를 설치하게 되고 헌법 조사회의 회장에 개헌파인 기시노부스케(岸信介)가 취임하게 되면서 개헌은 정치과제로서 부상하게 된다. 그리고 54년 12월 요시다 내각 불신임안에 의해 요시다 내각이 총사직하고 개헌파 하토야마가 수상으로 취임하면서 개헌은 주요 정치과제로 정면에 나서게 된다.

하토야마를 비롯한 복고주의적 보수정치가들에 의해 주장된 당시 개헌론의 특징은 명치 헌법 시스템을 참고로 하여 전전의 일본의 부활을 피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었다. 개헌파들은 상징천황 규정을 개정하여 명치 헌법상의 천황의 지위인 원수로 복권하고, 9조를 개정하여 군대를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통수권, 선전포고, 계엄, 군법회의 등 명치 헌법에 나타나는 군사적 시스템을 부활시키고자 하였다. 인권규정에 있어서도 국방의 의무를 비롯한 의무 규정의 추가하여 일본 사회의 전통적인 제도의 부활시키려고 하는 복고적 성향이 강하였다.²²⁾ 그리고 이러한 헌법 개정의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헌법 9조의 개정에 의한 재군비 합법화로서 「역코스」의 총체적 성격을 띤 것이었다.²³⁾

55년 11월 좌·우사회당이 「재군비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 투쟁」의 기치를 내걸고 사회당으로 통일하고 민주당과 자유당도 합당하여 자유민주당을 결성함으로써 이른바 55년 체제가 성립된다. 55년 체제라고 하는 것은 자민당과 사회당이라고 하는 2당 체제가 개헌파 호헌이라고 하는 대결을 하나의 축으로 하여 정계가 재편성된 것을 의미하였다.²⁴⁾ 자민당 1당 우위의 상황에서 하토야마 내각은 중참양원에서 개헌안 발의를 낙관하였으나 55년 56년의 선거에서 중참양원에서 잇달아 개헌 반대 당파의 의석이 3분의 1을 넘어 개헌안 발의에 이르지 못한다. 하토야마 내각은 중의원에서의 3분의 2의 다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선거구제의 도입을 강행하려고 하였으나 사회당 등의 반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결국 개헌안 발의에 실패하게 된다. 이 후 1956년 하토야마 내각이 총사직을 하게 되면서 개헌 논의는 잠잠해지고 헌법 조사회도 조사심의를 종료하게 된다.

2) 호헌적 평화운동의 논의와 전개 양상

전후 일본의 호헌적 평화운동은 이와 같은 평화헌법에 저촉되는 재군비를 합법화 하려는 개헌 논의에 대항하며 전개되어 나간다. 전후 최초의 호헌적 성격을 내포하는 평화운동은 1950년 1월 「평화문제담화회(平和問題談話會)」의

22) *ibid.* pp. 424-425.

23) 長谷川正安(1981) 『憲法現代史(下)－安保と憲法』日本評論社. p.442-443.

24) *ibid.* p.457.

기지 반대 성명과 2월 「평화를 지키는 회(平和を守る会)」 발족을 통한 전면강화 운동을 들 수 있다. 49년 3월에 정식으로 발족한 「평화문제담화회」는 잡지 『세계(世界)』의 편집부에 있었던 요시노 겐자부로(吉野源三郎)가 필두가 되어 중견 학자인 쿠노 오사무(久野収)와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시미즈 이쿠타로(清水幾太郎)를 비롯한 전후 지식인들이 모여 강화의 문제 평화에 관한 연구 토론에 기초하여 몇 차례에 걸쳐 성명을 내게 된다.

「평화문제담화회」에 참여한 전후 지식인들은 전쟁을 막지 못했다고 하는 반성과 두 번 다시 군국주의와 전제정치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결의로 공동체를 만들어 사회 운동에 참가하게 된 것이었으며 이들은 당시 정부에 의해 추진되어 오던 미국과의 단독강화의 움직임과 안보조약, 개헌과 재군비에 반대하여 담화회 성명을 발표하였던 것이다. 50년 1월 발표된 「강화문제에 관한 성명(講話問題についての声明)」 담화회 성명에서는 미소대치의 군사화 논리와 이로 인한 전쟁의 위험성 초래 결과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성명서에서는 ‘전쟁준비는 기본적인 인간의 모든 가치에 파멸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전쟁은 물론 전쟁 준비 자체가 초래하는 엄청난 피해 결과는 그 어떠한 이데올로기라도 정당화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무엇보다 전면 강화의 논거로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진영 모두 군사적 총동원체제를 고도화 시키는 면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파시즘적 세력의 재발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 인한 무장 국가 권력을 비판하였다.²⁵⁾ 즉 평화문제담화회는 강화문제를 단순한 강화문제로 국한하여 보지 않고 광범한 평화문제라는 맥락 속에서 파악하면서 미소 양진영의 파시즘적 논리를 모두 비판하고 전쟁의 논리를 합리화 하는 국가 권력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일본의 독립과 안전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단독강화가 아닌 전면강화가 필요함을 주장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 하에 군사기지반대와 중립불가침, 평화 헌법의 옹호, 안보 조약반대라고 하는 원칙들이 나오게 된다.

또한 한국전쟁 발발이라는 사태에 기초하여 발표한 성명 「삼차평화에 관하여(三たび平和について)」는 한국전쟁을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전쟁으로 규명하면서 일본국민이 세계를 향해 맹세한 헌법 제9조의 항구평화주의를 근거로 경솔한 재군비를 비판하였다.²⁶⁾ 담화회는 오늘날의 인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ies)²⁷⁾처럼 과학자들의 연구와 토론의 조직 이라고 하는 입장에 선

25) 「世界」主要論文選編集委員会 編(1995) 『「世界」主要論文選 1946-1995 : 戦後50年の現実と日本の選択』岩波書店. p. 151-161.

26) *ibid.* 151-155.

27) Hass. PeterM.(1992)“Introduction: Epistemic Communities and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6, No.1(Winter) p.5.

전문 지식인들의 발언으로서 전문지식과 여론동원능력을 통해 당시 사회 운동²⁸⁾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인들의 행동은 전후 정부의 정책에 대항하여 일어난 최초의 획기적인 호헌적 평화운동으로 평가되고 있다.²⁹⁾

본격적인 호헌적 평화운동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미일안보조약이 발효된 52년 이후 매년 「악법」 반대투쟁과 또한 우치나다를 비롯한 미군기지 반대투쟁이 호헌운동으로서 전개된다. 「악법」 반대투쟁은 헌법의 원칙인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의 옹호에 초점을 맞춘데 반해 기지 반대투쟁은 안보조약에 의해 침해된 항구평화주의 옹호를 문제시 하는 것이었다.³⁰⁾

미 점령시기에도 군사 기지를 둘러싼 지역주민의 투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점령 하 투쟁의 내용은 피해의 보상액 증액 요구이거나 연습의 중지를 요구하는 부분적인 요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52년 이후 샌프란시스코 체제 하에서의 기지 반대 투쟁은 기지의 존재 그 자체를 반대하는 반기지투쟁으로서 광범한 국민의 관심을 모으게 된다. 52년 가을에 시작되어 53년에 전개되는 우치나다(内灘)투쟁은 그러한 의미에서 최초의 선구적 호헌 운동이었다.³¹⁾ 1952년 9월 이시가와현(石川縣)의 반농 반어촌 마을 우치나다는 미군 시사장(試射場)로서 접수되었음을 통고받게 된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 미군의 탄환 수요가 늘어나자 일본 국내에서 납입되는 탄환의 성능을 조사하기 위한 시사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이 결정에 대해 마을의회는 반대 결의를 단행하고 우치나다 마을 사람들과 노동자 시민 1500명이 합세하여 정부에 맞서 싸우게 된다. 이 기지반대 투쟁에는 사회당 공산당 등 전 야당이 지원하고 전 민주단체를 결집하는 현민(縣民)의 공동 투쟁이 발족하게 된다.³²⁾ 이 우치나다 투쟁은 기지문제의 정치적 본질을 명백하게 하는데 공헌하였으며 전국적인 반기지운동의 도화선이 되어 미군기지의 확장 반대와 철거를 요구하는 반기지운동이 아사마요기(淺間妙義) 기타후지(北富士) 스나가와(砂川)등지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된다.³³⁾

그 중에서도 스나가와 투쟁은 전국 기지 반대 투쟁의 큰 분기점이라고 일컬

28) Tarrow, Sidney G(1994) Power in movement : social movements, collectiveaction, and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pp.3-6. 테로(Sidney Tarrow)는“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에 연대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엘리트와 반대세력과 권위에 대한 집합적 도전”이라고 사회운동을 정의하고 있는데 당시 평화문제담화회의의 사회운동은 주목받을 만한 것임이 틀림없다.

29) 坂本義和(2004) 「平和運動における心理と論理」 『戦後外交の原理』 岩波書店 p.228.

30) 長谷川正安(1981) 『憲法現代史(下)―安保と憲法』 日本評論社. p.447.

31) ibid. p.449.

32) 平和運動30年記念委員會 編(1979) 『戦争と平和の日本近代史』, 大月書店.p.163-165.

33) ibid.166.

어지는 대투쟁이다. 1955년 5월 미군의 다치가와 비행장의 활주로를 연장하기 위해서 스나가와 마을중심부의 농지를 점수한다는 계획이 발표된다. 이 결정에 대해 주민들은 전원 일치로 기지 확장 반대 결의를 하고 「스나가와마을기지 반대동맹」(砂川町基地反対同盟)을 결성하여 반대 운동에 나섰다. 이 운동의 시발점은 농민들이 자신들의 토지가 기지 확장에 의해 몰수당하게 된 것에 대한 분노이었으나 점차 자신들의 토지가 군사지지로 사용되게 되는 것에 대한 반대로 나아가게 되면서 헌법과 평화를 지키는 투쟁으로 발전해 나가게 된다.³⁴⁾ 스나가와 투쟁은 지역 원주민 및 노동조합원, 전학련으로 결집한 학생들이 3년에 걸친 투쟁을 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다.

스나가와 투쟁의 영향으로 1955년 12월에는 「기지문제문화인간담회」(基地問題文化人懇談会)가 발족되고 작가, 평론가, 예술가, 학자 등 저명한 문화인들이 스나가와를 방문하게 되면서 광범한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게 되면서 국가 권력 횡포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형성되게 된다. 이러한 여론의 힘을 입고 스나가와 투쟁은 미군 주둔과 기지 확장이 헌법 9조에 위반한다는 논거로 15년간의 재판 투쟁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1957년 3월 스나가와 사건을 심리하고 있던 동경지방법판소의 다테아키오(伊達秋雄)판사가 내린 ‘다테판결(伊達判決)’은 호헌 운동에 커다란 힘을 불어넣게 된다.³⁵⁾ 다테판결은 안보조약에 기초한 미군의 주둔은 지휘권의 유무, 미군의 출동 의무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본국 헌법 제9조 제 2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육해공군 기타의 전역 보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었다. 판결문에서는 ‘헌법의 취지는 종래의 일본의 군국주의적 침략주의적 정책에 대한 반성을 나타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세계 영원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선구적인 숭고한 이상과 비장한 결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 9조의 해석은 이러한 헌법의 이념을 충분히 고려 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스나가와의 투쟁을 통해 「전국 군사기지 반대 연합회의」(全国軍事基地反対連絡会議)가 탄생하여 기지 투쟁의 전국적 연대가 조직적으로 확대된 것도 중요한 성과이었다.³⁶⁾

스나가와 투쟁의 승리는 국민적 공감과 공동 투쟁 속에 전국적으로 광범한 문화인들을 결집하여 호헌운동의 외연을 넓혀나가게 작용하였다. 스나가와 투쟁에 참여하였던 문화인을 중심으로 샌프란시스코체제에 대한 재검토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1954년에는 「호헌연합」(護憲連合)이 결성되었다. 호헌연합

34) ibid.p.189 당시 정부는 기지문제가 200건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이는 얼마나 많은 기지 투쟁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었는지 나타내고 있다.

35) 渡辺治(2009) 『憲法9条と25条-その力と可能性』かもかわ出版. pp.76-80.

36) 棚橋泰助 (1959) 『戦後労働運動史』大月書店. p.89.

은 광범한 학자, 문화인들이 모여 평화헌법을 무시하고 진행된 재군비에 반대하는 국민을 결집하고자 결성한 모임으로서 연합을 발족시킨 지도적 사람들-가타야마 테츠(片山哲), 아리타 하치로(有田八郎), 가자미 아키라(風見章) 등-은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주장하지 않고 평화 헌법 지키기를 목표로 하여 모인 각기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평화헌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계몽, 선전활동을 한다.’고 하는 규약³⁷⁾을 기치로 운동을 전개해 나갔는데 주로 동경, 오사카를 비롯한 전국 각지 주요 도시에서 헌법 개정반대를 위한 강연회를 개최하면서 헌법 개정반대 운동을 펼쳐나갔다.

처음에 계몽적인 평화헌법의 보급 활동을 하던 이 운동은 점차 정치적 성격을 가지게 되면서 기지문제와 호헌문제를 중심과제로 삼게 되고 하반기에는 일본의 평화와 독립, 국민의 생활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헌법의완전 실시가 중요함을 역설하며 점차 민주주의 옹호를 위한 인권문제로 나아가게 된다.³⁸⁾ 즉 「호헌연합」의 기관지 「평화와 민주주의」 논의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오키나와문제 및 스나가와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군사기지 문제가 크게 강조되었으나 이후 차차 일본의 평화와 독립 국민의 생활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헌법의 완전 실시로 그 중심축이 옮겨감을 볼 수 있다. 이는 호헌적 평화운동의 논거가 헌법 9조에 기초한 반전 반군사 항구평화주의 옹호에 머무르지 않고 헌법 전체 이념에까지 확장되어 감을 의미한다. 즉 평화헌법의 기본 원칙 - 국민주권의 원칙, 기본적 인권의 존중, 영구 평화주의-에 의거하여 평화운동의 논거의 외연이 점점 헌법 전체로 확대되어 나갔음을 뜻하는 것으로 호헌적 평화운동의 계몽적 성격이 점차 국민주권의 원칙과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저항운동으로 그 지평이 넓혀져 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 9조에 기초한 영구평화주의만을 위한 평화운동이 아닌 국민 주권의 원칙과 기본적 인권을 위한 운동으로 전개되면서 과거 명치헌법 하 통치자 천황을 중심으로 한 엄격한 근대적 위계질서에서 벗어난 민주주의 운동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호헌연합」 운동은 평화운동과 호헌운동이 일체가 되어 전개된 것으로 이 운동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이었다.³⁹⁾

그리고 이러한 평화운동은 국민들의 헌법 의식 및 반전 반군사 평화의식과 함께 민주주의 의식을 일깨우게 된다. 즉 50년대 호헌적 평화운동은 개헌과 재군비 정책에 대항하면서 반전 반군사화 형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작용⁴⁰⁾함으로써 비군사적 평화주의를 국민 의식 속에 뿌리내리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국민 주권의 원리와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위한 인권문제에 대한 자각과 자발적인 풀

37) 歴史学研究会編(1990) 『日本同時代史 ; 第3卷 五五年体制と安保闘争』 青木書店 p.134.

38) 長谷川正安(1958) 『政治の中の憲法』 弘文堂 p.95-100.

39) 長谷川正安(1981) 『憲法現代史—安保と憲法』 日本評論社 p.457.

40) 和田進(1997) 「戦後日本の平和意識」, 青木書店. p.100.

뿌리 운동의 본질을 깨닫게 하면서 일본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이었다.

사카모토 요시카즈(坂本義和)는 ‘시민의 평화주의와 평화운동이 일본의 군사화를 저지하였기 때문에 일본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었다.’⁴¹⁾고 평가하고 있는데 50년대 전개되었던 평화운동이 일본의 재군비를 반대하고 군사화를 저지하고 시민에 의한 민주주의가 확립되는데 이바지 하였던 것은 분명하다. 이는 모리히데키(森英樹)의 지적처럼 평화운동이 처음부터 자각된 헌법 운동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으나⁴²⁾ 군사기치반대, 재군비 반대의 운동이 헌법 평화주의 조항을 하나의 논거로 전개되어 나가면서 호헌적 성격이 강한 평화운동으로 전개되어나갔으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범국민적 평화운동이 개헌 논의를 저지하고 평화주의를 견지할 수 있었다는 면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3. 호헌적 평화운동에 나타나는 탈근대적 평화담론

이상 전후 50년대 반군사화와 인권 옹호 원리 속에 전개된 호헌적 평화운동의 논의 속에는 오늘날 동북아 역내 비군사적 평화구축에 매우 의미 있는 탈근대적 평화담론의 특징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탈근대라는 언설에는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 글에서는 근대적 평화담론의 대항적 의미로서의 탈근대성을 뜻한다. 근대적 평화담론의 기초는 근대 국민 국가(Nation-state)이다. 국가는 영토적 경계 안에서 절대적 권위를 가진 최고의 권위체이다. 이러한 국가의 논리는 국가 안과 밖을 구별하고 명확한 경계에 의해 구별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배권을 가지고 경계 내에서 최고의 권력이 되는 주권의 개념이 생겨난다.⁴³⁾ 그리고 경계 밖은 무정부상태로 정의하게 되면서 국가 주권을 수호하는 국가안보는 최고의 목표이자 절대적 가치이며 이로부터 국가중심적, 군사중심적 안보관이 도출된다. 즉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는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견해로서 이러한 국가 중심적 안보관에 기초한 평화담론이 근대적 평화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적 평화 개념은 냉전의 종식과 함께 탈냉전 시대를 맞아 근대국가 질서의 변환과 함께 탈근대 지구화 담론이 대두 되면서 근대국민국가라고 하는 단위체에 기초한 주권 국가의 패권적 군사력 중심의 안보에 대한

41) 坂本義和 「平和主義の逆説と構想」 『世界』 1994 7월호.

42) 森英樹(1975) 「平和運動における日本国憲法」 『法律時報』 제 47권 12호 p.220.

43) 岩木秀樹 (2013) 『戦争と平和の国際関係学：地球宇宙平和学入門』 論創社 p.119.

비판이 제기되었다. 냉전 시대 미소 양세계가 권력을 독점하였던 것과 달리 다층적인 상호의존적 권력 구도로 재편되면서 다양한 층위에서의 상호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주권 국가의 경계가 모호하게 되고 군사력의 실제적인 사용 혹은 위협을 통한 국제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점차 그 효용성을 잃어 가게 된 것이다.⁴⁴⁾ 로즈노(Rosenau)는 국민국가들이 지구의 무대를 장식했던 국제 정치의 시대는 지났으며 탈국제 정치 시대가 도래 하였다⁴⁵⁾고 보았는데 이는 국민 국가의 역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탈냉전 글로벌시대, 혹은 지구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국가의 상대화를 전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새로운 국민국가의 틀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⁴⁶⁾이 도래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탈근대적 평화담론의 기저가 되는 논의가 호헌적 평화운동의 논의와 전개 속에 나타난다. 헌법 9조에 기초하여 항구평화원칙을 내세우며 군사기지 반대, 재군비 반대의 운동을 전개해 나간 평화운동은 절대적 평화주의적 견지에 서서 국가 중심 이데올로기와 군사화에 의한 평화의 한계를 비판하며 비군사적 방법을 통한 평화를 주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평화와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 국민국가의 존재를 중심으로 한 근대적 접근을 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군사화문제에서 벗어나 국가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이라는 시점 하에서 평화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보고 「인권으로서의 평화」라고 하는 탈근대적 평화담론의 맥아가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 주권과 인권옹호를 내세운 아래로부터의 운동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적 운동의 특징을 가지는 탈근대적 평화담론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탈근대적 평화 담론은 평화구축의 주체 문제에 있어 국가만이 주요 행위자가 될 수 없고, NGO, 시민사회 등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의 폭넓은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⁴⁷⁾ 이신화는 탈냉전 시대를 맞아 심층적인 안보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국가 위주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관계의 행위자가 국가뿐 아니라 정부 간 기구, 비정부단체(NGO), 인식공동체, 풀뿌리조직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이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국가나 지역차원의 안보의제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말하고 있다.⁴⁸⁾ 즉 국가를 주체로 한 국가 주권 위주의 군사력에 의한 평화 구축이 아닌 비국가 주체들에 의한 인권 중심의 평화 구축이 탈근대적 평화담론의 시각인 것이다. 평화 구축의 주체

44)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엮음 (2010) 『(국경을 넘어서) 아시아 문제와 시민사회의 역할』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p.15-16.

45) 스튜어트홀(Stuart Hall)외 저(2000)전효관옮김 『모더니티의 미래』 현실문화연구.p. 104.

46) 小倉充夫 [外]編 (2009) 『アジア社会と市民社会の形成 : その課題と展望』,文化書房博文社. p.91-92.

47) Commission on Human Security(2003) 6.

48) 이신화(2008) 「비전통안보와 동북아시아협력」 『한국정치학회보』 42권 2호pp. 411-434..

가 국가가 아닌 다양한 행위자들- 시민사회나 NGO 등의 비국가행위자들의 초국가적 관계,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네트워크-을 통해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초래하고 분쟁과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평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국 정부 혹은 소속 집단을 무조건 지지하고 상대방을 적대시 하는 근대적 틀을 넘어 국가의 주인인 시민의 입장에서 안보 문제를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⁴⁹⁾ 탈냉전 이후 인권의 세기를 맞아 인권으로서의 평화는 제 3세대 인권이자 평화권의 이름으로 인권중심의 평화 구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 되고 있는데⁵⁰⁾ 국가가 주체가 된 국가 주권을 중심으로 한 평화 담론이 아닌

시민사회를 비롯한 비국가 주체들에 의한 인권을 중심으로 한 평화 담론이 탈근대적 평화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평화 주체와 인권으로서의 평화 논의로서의 탈근대적 특성이 호헌적 평화 운동 속에는 나타나고 있다. 명치헌법 하 일본 제국 헌법 체제에서는 천황이 모든 통치권을 총괄하는 존재였다. 천황의 지위는 만세일계의 신성한 존재로서 명치헌법에 명기된 천황주권의 원칙에 의거하여 천황은 천황대권으로 불리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절대주권자로서 국민은 천황을 위해 존재할 뿐이었다. 그러나 호헌적 평화운동은 국민들로 하여금자각적 헌법 의식을 일깨우면서 평화 헌법 전문⁵¹⁾에 명기되어 있는 ‘..여기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라고 국민 주권의 원리를 자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호하기 위한 운동을 펼쳐나가게 하였다. 즉 전쟁과 평화에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국정의 주권자가 국민임을 자각하고 과거 명치헌법 체제 하 천황에게 속했던 권한이 국민들에게 있음을 자각한 자발적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전개해 나

49) 서보혁(2011) 「분쟁 후 인간안보와 남북 관계 : 천안함·연평도 사건 사례연구」 『세계정치』 제32집 2호 p.235.

50) 辻村みよ子 「人權としての平和と日本国憲法」 『憲法から世界を診る』 法律文化社, pp.1-8.

Douglas Roche(2003), The Human Right to Peace, Saint Paul University, P.124.

51) 일본 헌법 전문 일본 국민은, 정당하게 선거된 국회에 있어서의 대표자를 통해 행동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을 위해서, 모든 국민과의 협동에 의한 성과와, 우리나라 전 국토에서 자우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고, 정부의 행위에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일이 없을 것을 결의하고, 여기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이 헌법을 확정한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수한다. 이것은 인류 보편의 원리이고,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다. 우리들은, 이것에 반하는 일체의 헌법, 법령 및 조칙을 배제한다. 일본 국민은, 영원한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게 자각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고, 우리들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들은,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하게 제거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전세계의 국민이, 공포와 결핍을 면하고,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확인한다.

가게 한 것이다. 전쟁과 군비, 평화와 군축의 문제가 이른바 국가와 정부의 전권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통제 하에 있다는 논리를 가지고 국민이 국정을 감시 비판 통제하는 자리에 선 것이었다.⁵²⁾ 기지반대운동을 비롯한 호헌적 평화운동은 폭넓은 민중의 참여로 이루어진 풀뿌리 운동으로서 지역의 원주민 및 노동조합원, 학생, 주부 모두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적 주체가 되어 시민의 힘에 의한 인권으로서의 평화를 주장하며 일본의 재군비와 개헌에 맞서 일어났던 것이다. 이는 근대적 위계질서가 강하게 뿌리내려져 있고 국가 중심적 이데올로기가 팽배하였던 50년대 시대배경을 생각해 볼 때 놀라운 자각적 아래로부터의 운동으로서 이러한 운동을 통해 일본의 국민주권의 원리와 기본적 인권의 존중, 항구 평화주의 평화헌법의 3대 원리가 수호 될 수 있었으며 민주주의를 확립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4. 결론

이상 50년대 헌법 개정논의의 배경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호헌적 평화운동의 전개 양상과 논의를 살펴보았을 때 군사화 반대와 국민주권, 인권옹호를 내세운 호헌적 평화운동 속에서 탈근대적 평화담론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었다. 호헌적 평화운동은 헌법 9조를 기초로 항구평화주의를 외치며 일체의 전쟁을 반대하고 비무장 절대평화를 주장하며 일본 내 평화주의를 뿌리내릴 수 있게 하였다. 다만 이러한 평화운동 속에 나타난 평화 담론 속에는 군사적 가치를 부정하는 비무장 반전 의식은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일본 평화헌법의 평화주의 원리의 근본 배경이 된 제국주의 침략의 가해자의식에 기초한 철저한 반성이나 자각이 없는 문제점⁵³⁾이 있다. 아사이 모토후미(淺井基文)는 제9조의 평화주의가 피해자 의식만이 강조되고 가해자로서 과거에 대한 반성없이 제9조의 평화주의를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패로 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⁵⁴⁾하고 있으며 국내외 많은 학자들이 일본의 가해인식 부재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가해인식부족은 사카

52) 深瀬忠一(1987) 『戦争抛棄と平和的生存権』 岩波書店p.194.

53) 와다 스스무(和田進)는 '가해자로서의 전쟁 책임 자각에 기초하여 다시금 침략자가 되지 않도록 반제국주의 의식을 견고하게 확립해야 한다'. (和田進 ibid p.180)고 하였으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1997) 역사비평사 p.431)에서 수억의 아시아인이 일본의 침략주의로 인해 막대한 고통을 당한 사실을 외면하고 세계 유일의 피폭국가로서의 피해국이라는 집만 강조하는 가해자 의식의 부재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으며 이외 국내외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지적 제기되어 오고 있다,

54) 淺井基文(1993) 『新保守主義・小沢新党は日本をどこへ導くのか』 柏書房. pp.84-85.

모토 요시카즈(坂本義和)의 지적처럼 ‘평화헌법도 자위대도’처럼 변용된 자기중심적 평화주의의 한계를 가지며 이는 동아시아 역내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⁵⁵⁾하는 미성숙한 면도 있다.

그러나 전후 냉전 이데올로기가 팽배하던 시대, 보수 세력에 의한 재군비가 진행되던 시대에 자각된 헌법 의식에 기초하여 국가의 자위권이나 이를 위한 군비 재무장의 길이 아닌 철저한 비무장 반군사화와 인권 중심의 평화를 주장하였다는 점, 근대적 가치의 소산인 국민국가 중심을 뛰어넘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였다는 점, 개헌이 진행되던 국내 정치 속에서 평화헌법을 견지하고 평화주의를 뿌리내리게 하였다는 점에서 호헌적 평화운동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운동이 위로부터 아래로의 강압적 운동이 아니라 국민주권원리를 자각해 나가면서 시민들의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풀뿌리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운동의 특징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호헌적 평화운동 속에 나타나는 탈근대적 평화담론은 동북아 지역에서 과열화 되고 있는 군사화를 방지하고 비군사적 부분의 협력을 도모하며 협의와 합의를 통한 공존의 가치를 공유하는 평화를 구축해나가야 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매우 큰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동북아내 과열화된 군비경쟁과 안보 불안 영토문제 등은 정부 차원의 국가 주권과 국익을 중심으로 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동북아 역내의 안보 딜레마가 강대국의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역내 지역 정체성을 배양하지 못한 문제임을 지적한 문정인·서승원은 민족적 정체성과 내셔널리즘을 넘어 상호 불신과 의심의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역내 공존과 화해의 지역 정체성이 필요함을 주장⁵⁶⁾하고 있으며 손열은 동북아 역내의 문제가 서로 다른 규범적 질서를 구축하려는 국가 간, 국가군 간 경쟁 때문임을 지적하면서 21세기 동아시아 공간에서 미국과 중국의 양자의 규범을 넘어서야함을 주장하고 있는데⁵⁷⁾ 이러한 논의들은 동북아 역내 보편적 평화 규범과 정체성의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며 동북아 역내 공유된 보편적 평화적 규범이 창출될 때 안보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보편적 평화규범과 정체성 형성은 근대가 강조하는 국가와 주권과 국익을 앞세우는 국가행위자들에 의해서만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국가 중심을 뛰어넘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과 시민의 연대에 의한초국

55) 坂本義和(2004) 「平和運動における心理と論理」 『戦後外交の原理』 岩波書店 p.244.

56) Chung in-Moon·Seung Won Suh 「Identity politics, Nationalism,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n order」 kenberry, G. John ·Moon, Chung-in (2008) The United States and Northeast Asia : debates, issues, and new order, Lanham, Md. : Rowman & Littlefield . pp.193-218.

57) 손열(2008) 「동아시아 경합하는 국제사회 구상」 『세계정치』 10(0) pp.157-186.

가적 시민사회의 평화운동이 확산되어 나갈 때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동북아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역내 근대 국민국가를 뛰어넘는 보편적 가치와 정체성 공유를 위한 초국적 시민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⁵⁸⁾ 이러한 점에서 전후 50년대 일본 사회에서 거국적으로 전개된 호헌적 평화운동 속에 내포되어 있는 탈근대적 평화담론은 안보딜레마와 전쟁의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 역내 평화 구축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 구갑우(2007)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후마니타스. p.242
 _____(2008) 『국제관계학 비판 : 국제관계의 민주화와 평화』 후마니타스. p.200
 문정인, 서승원(2013) 『일본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 일본 최고 전략가들이 말하는 일본의 本心』 삼성경제연구소, p.154
 주성수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아르케. p.22
 손열(2008) 「동아시아 경합하는 국제사회 구상」 『세계정치』 10(0) pp.157-186.
 조민(2012) 「김정은 체제의 대내외 전략과 통일정책」 통일정책연구 제21권 제2호 p.3
 大賀哲(2013) 『東アジアにおける国家と市民社会 : 地域主義の設計・協動・競合』, 柏書房.P.25.
 岩木秀樹 (2013) 『戦争と平和の国際関係学 : 地球宇宙平和学入門』 論創社 p.119.
 小倉充夫 [外]編
 (2009) 『アジア社会と市民社会の形成: その課題と展望』, 文化書房博文社. p. 91-92
 坂本義和(2004) 「平和運動における心理と論理」 『戦後外交の原理』 岩波書店 p.244.
 「世界」主要論文選編集委員会 編(1995) 『「世界」主要論文選 1946-1995: 戦後50年の現実と日本の選択』 岩波書店 pp. 151-161.
 末川博(1965) 『憲法問題の焦点: 国民一人ひとりの運動にするために』 京都平和委員会. p.67-68
 長谷川正安(1958) 『政治の中の憲法』 弘文堂 p.95-100.

58) 渡辺治 『憲法9条と25条: その力と可能性 (2009)』 p.265

- 長谷川正安(1981) 『憲法現代史—安保と憲法』 日本評論社 p.457.
- 深瀬忠一 (1987) 『戦争抛棄と平和的 生存権』 岩波書店 p.194.
- 平和運動30年記念委員会編(1979) 『戦争と平和の日本近代史』 ,大月書店.pp.163-165.
- 森英樹(1975) 「平和運動における日本国憲法」 『法律時報』 제 47권 12호 p.220.
- 歴史学研究会編(1990) 『日本同時代史 ; 第3卷 五五年体制と安保闘争』 青木書店 .p.134
- 棚橋泰助 (1959) 『戦後労働運動史』 大月書店.p.89.
- 渡辺治(2002) 『憲法「改正」の争点-資料で読む改憲論の歴史』 旬報社pp. 420-421.
- 渡辺治(2009) 『憲法9条と25条·その力と可能性』 かもがわ出版 pp. 76-80.
- 文正仁(2009) 「移行期の東北アジア-北の核問題と将来の地域秩序-」 孝忠延夫 [外]編著 『グローバル市民社会における平和, 安全, そして安心』 関西大学出版部, p. 71-91.
- 孝忠延夫 [外]編著(2009) 『グローバル市民社会における平和, 安全, そして安心』 ,西大学出版部.p.3-6.
- Chung in-Moon·Seung Won Suh 「Identity poiltics, Nationalism,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n order」 kenberry, G. John ·Moon, Chung-in (2008) The United States and Northeast Asia : debates, issues, and new order, Lanham, Md. : Rowman & Littlefield . pp.193-218.
- Mearsheimer,J.J.(2006). China's unpeaceful rise. Current History, 105(690), pp.160-162.
- Mearsheimer,J.J.(2010). The Gathering Storm: China's Challenge to US Power in Asia.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3(4), p.381.

要 旨

Northeast Asia, marked by militarization resulting from regional hegemonism and an arms race, is one of the most dangerous areas in the post-Cold War world, where peace is severely threatened. Military tensions in Northeast Asia reflect how imperative it is to enter into peace discourse through nonmilitary means.

This article presents discourse against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militarization and tries to help reach an agreement on building regional peace in Northeast Asia by looking at discourse on the postwar constitution protection moveme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postmodern peace discourse.

It also looks at the development of the peace movement for constitution protection in the 1950's, when Japan's peace movement began, while examining arguments and peace discourse related to the movement.

Centered more on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than on national sovereignty, Postmodern peace discourse during Japan's postwar peace movement for constitution protection viewed peace issues as human rights concerns rather than national defence concerns based on military power. Nonmilitary peace building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will be possible if transnational, universal postmodern values are expanded by transnational civil solidarity.

키워드 : militarization, Northeast Asia, post-modern,
peace movement, Constitution protection movement

투 고 : 2014. 8. 31
1차 심사 : 2014. 9. 13
2차 심사 : 2014. 10. 4